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5.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26, 김용민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 2025. 2.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4. 3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5. 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5. 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용민의원)

현행 「감사징계법」은 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감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감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감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감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감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검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개정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감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감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 징계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

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단독 징계권한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측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범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총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검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 중 “검찰총장이”를 “징계청구자가”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경우 검찰총장”을 “경우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u>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u> ----- ----- ----- ----- ----- -----.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회는 <u>검찰총장</u> 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 <u>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u> -----.
<u><신 설></u>	1. 법무부장관
<u><신 설></u>	2. <u>검찰총장</u>
② <u>검찰총장은</u>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u>징계청구자는</u>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징계청구자(-----

-----는-----

-----.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징계청

<u>장</u>(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u>검찰총장</u>(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징계청구 이후에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생략) ④ <u>검찰총장</u>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u>구자</u>----- ----- -----<u>는</u>-----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u>징계청구자</u>(----- ----- -----<u>는</u>----- ----- ----- ----- ----- ----- ----- ----- -----. 제18조(징계의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징계청구자</u>는----- ----- -----.
--	--